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뒷 면》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성명	—		직업
주민등록번호			국적
여행목적	☐ 관광 ☐ 사업 ☐ 친지방문 ☐ 공무 ☐ 교육 ☐ 기타		
선박편명			여행기간
한국 입국전 방문 국가들 1. 2. 3.			
한국내 주소 : 연락처 : ☎ ()			
※ 한 가족(직계)당 대표로 1인이 신고 가능(동반가족수 명)			

세관신고사항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 ☐
2.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및 살해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 ☐
3. 동·식물, 과일채소류 등 식품 또는 그 재료	☐ ☐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 ☐
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
6.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7.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 ☐
8. 미화1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
9. 휴대품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한 물품	☐ ☐
10.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	☐ ☐

▶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및 기타식품 등 상세신고

품목	중(수)량	품목	중(수)량
농림축수산물(한약재, 기타식품 포함)	()kg	담배	()보루
공산품	()kg	한약	()
주류	()병		()
품목명	중(수)량	품목명	중(수)량
고추(가루포함)	()kg	상황버섯	()g
참깨	()kg	녹용	()g
참기름	()kg		()kg
흑미(참쌀포함)	()kg		()
인삼(홍삼포함)	()g		()

473-009111, 85mm×210mm, '06.9.11개정, 일한용지120g/m'

세관신고 안내사항

유의사항

※ 모든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 휴대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총포, 도검, 화약류, 방사성 또는 유독성 물질 등 테러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신고 및 신변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 마약, 밀수품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해외여행중 전염병 또는 가축질병 발생지역이나 가축사육농장 방문 사실이 있었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면세허용범위

◇ 종류에 관계없이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60ml이하로서 1병)(단 19세 미만인 경우 주류, 담배는 제외)

◇ 해외(국내외면세점 포함)에서 구입한 물품 합계액 중 US\$400이내(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

* 단,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총량 50kg, 총구입금액 10만원 이내로서 갖 1kg, 쇠고기 10kg, 기타 농림축수산물은 품목당 5kg 이내, 인삼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이내(검역합격분에 한함)

* 한약의 경우 총 10품목, 총구입금액 10만원이내로서 수량(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 승무원의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여행자와 달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물품
2.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있음 없음
☐ ☐
☐ ☐

이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본인의 휴대품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통관한 물품을 사후에 판매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 물품을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대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여행자(승무원) 세관 신고서				세관신고 안내사항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국적			
여행목적	☐ 관광 ☐ 사업 ☐ 친지방문 ☐ 공부 ☐ 교육 ☐ 기타				
항공편명		여행기간		일	
한국 입국전 방문 국가들					
1. 2. 3.					
한국내 주소 :					
연락처 : ☎ ()					
※ 한 가족(직계)당 대표로 1인이 신고 가능(동반가족수 명)					

세관신고사항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 □
2.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및 살배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약품류 □ □
3. 동·식물, 과일채소류 등 식품 또는 그 재료 □ □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 □
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
6.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7.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 □
8. 미화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
9.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긴급수리물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A.T.A까르네 물품 □ □
10. 휴대품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한 물품 □ □
11.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 □ □
12. 기타 신고여부에 의문이 있는 물품이나 사항 □ □

유의사항

※ 모든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지정하는 경우 휴대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총포, 도검, 화약류, 방사성 또는 유독성 물질 등 테러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휴대품신고 및 신변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은 테러물품, 마약, 밀수품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실 수 있고, 여행자가 제시한 영수증 가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합니다.

◇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해외여행 중 전염병 또는 가축질병 발생지역이나 가축사육장 방문사실이 있었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품 면세허용범위

◇ 종류에 관계없이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400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60ml이하로서 1병)
(단, 19세 미만인 경우 주류, 담배는 제외)

◇ 해외(국내외면세점포함)에서 구입한 물품 합계액 중 US\$400이내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

※ 단, 농림축수산물, 한약 및 한약제는 총 구입금액 10만원이 내이며 수량(중량)제한이 있습니다.

◇ 승무원의 경우에는 면세범위가 여행자과 달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휴대품 신고 및 면세제도에 의문이 있으면 세관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신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별지 제2-1호 서식”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출국시 기재사항>

구분	출국일	입국예정일	인솔인원	도착국	경유지	출국편명	입국예정편명

<입국시 기재사항>

구분	입국일	출발국	경유지	입국편명	인솔인원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신고대상물품 미소지자

출국시 기재사항						입국시 기재사항		
연번	성명	여권번호	성별	직업	연락처 (☎)	신고대상물품 (유/무)	기타사항 (1번/2번)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기타사항 : 1. 대리운반 2. 전염병, 가축질병 발생지역 또는 가축사육농장 방문

※ 세관에 신고할 물품은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 길잡이"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시 세관에 신고대상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세관직원에 의해 휴대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고하시거나 신고대상물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일자	여행사명	가이드여권번호	가이드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휴대품유치서(세금계산서) CERTIFICATE OF CUSTOMS CUSTODY											
성명 Name				신고번호 Declaration No							
주민등록번호 Registration No				TAG 번호 Tag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중량 Weight							
전화번호 Telephone				기(선)명 Flt/Ship No							
주소 Address				입항일 Arrival Date							
입국회수 No of visits				수리일 Permit Date							
순위 No	품명 및 규격 Description of Articles						수량 Quantity	세번부호 HS Code	주세율 Liquor Tax Rate	(기타세목) Other Taxes	비고 Remark (면세부호) (Duty Free Code)
							단위 Unit	과세가격 Customs Value	주세율 Liquor Tax	가산세 Penalty Tax	
							평가방법 Evaluation Method	관세율 Duty Rate 관세 Customs Duty	교육세율 Education Tax Rate 교육세 Education Tax	부가가치세 Value-added Tax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결재	검사자	주무	조정	주무	과장	세관장	합계 Total	과세가격 Customs Value			환율 Exchange rate
											납기내세액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통관이나 반송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따라 공매처분되거나 국고에 귀속됩니다. The detained article will be put up at a public auction or become government property, if they are not cleared or taken back from the Customs area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de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Customs Act. 유치물품에대한 통관, 반송 및 보관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customs clearance, returning of goods and custody charge of items under custody, please refer to the back of this page. 세관 검사직원으로부터 별지에 있는 통관, 반송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습니니다 Instructions about clearance and returning of goods was given by customs inspector. (Traveler's Signature)											

